속보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영요강 개정

('90. 5. 1부터 시행)

— 공업진흥청 —

공업진흥청에서는 현행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영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하고 90. 5. 1부터 적용시행키로 하였다.

(공업진흥청고시제90-164호 90. 3. 17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 12 조(심사기준)에 의한 별지 제 9 호 서식	별지 제 9 호 서식 개정 : 내용 별첨	
제 13 조(허가신청) 규칙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이를보완케 한다. 이 보완기간은 10 일(법 제 15 조의 3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일)로 하고 그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신청서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제 13 조**(허가시청) ①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허가 또는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주요제조·가공설비에 관한 명세서 2. 신청품목의주요시험·검사설비명세서 3. 신청품목의 공정별 품질관리 상황개요서 4. 신청품목의 자재관리 상황개요서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신청서류의 내용을 심사하고 보완사항을 지적하여	○〈신설〉 -신청서류에 의한 심사방향 제시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 3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대하여 심사방향을 제시하거나 표시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근거설정
	③제 2 항의 보완기간은 10 일 (표시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20 일) 로 하고 그기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의 신청 또는 승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신설〉 —현행 제 13 조후단 분리
제 17 조 (공장심사보고) 에 의한 별지 제 11 호 서식	별지 제 11 호 서식 개정 : 내용 별첨	
제 19 조 (공장심사의 생략) ①……	제 19 조 (공장심사의 생략) ①	
5 . 제 31 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능력평가를받은 공장이 해당 규격수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된 후 1 년이내에 표시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5 . 〈삭 제〉	5 . 〈삭 제〉 —능력평가에 의한 공장심사 생략조항 삭제
②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제품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제 3 호 및 제 4 호의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 5 호의 경우에는 평가시의 제품시험으로 대체한다.	②다만 이하 삭제	○제 1 항 제 5 호 삭제에 따른 조치
제 20 조 (표시의 허가•승인) ①표시의 허가는 심사기준에 정한 허가구분에 따르되, 별표 1 의 "표시허가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 검토요령 " 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제 20 조 (표시의 허가 • 승인) ①……따르되, 별표 1 의 "평가결과에 대한 표시허가 판정기준 " 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1 개정 : 내용별첨	○표시허가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 검토요령을 "평가결과에 대한 표시허가 판정기준 " 으로 개정
제 26 조 (공장검사) ④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	제 26 조 (공장검사) ④……	○특별공장검사 사유 추가 —공장이전등 생산조건 변경
1 . 시행령 제 33 조의 3제 1 항 제 1 호에 의한검사	1 . 시행령 제 33 조의 3제 1 호 및 제 4 호에 의한 검사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2. 제 29 호 제 5 항에 의한 검사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2. 제 26 호의 2 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능력평가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3. 제 29 조 제 5 항에 의한 검사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이전, 양도, 확장 축소 기타등 —평가기관 검사미필시 특별 공장점검 실시 —현행 제 2 호를 제 3 호로 함. —현행 제 3 호를 제 4 호로 함.
	제 **26** 조의 **2** (평가기관에 의한 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동일품목 생산업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품목을 공고하고 지정된 표준화 능력평가기관으로하여금 검사를 하게 함으로써 특별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1. KS 규격 및 심사기준의 개정으로 품질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시판품조사 및 공장검사 결과 해당 KS 표시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새로운 기술적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과다경쟁등 사유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품질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	〈신 설〉 ○평가기관에 의한 검사(일명 공시검사) 근거마련 —평가기관 검사사유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대상품목 2. 검사신청 및 검사실시기간 3. 검사담당 표준화능력평가기관 4. 검사내용 및 방법 5.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고할 내용
	③공업진흥청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때에는 검사대상업체에 별지 제 11-2 호의 서식에 의한 검사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 11-2 호 서식 신설 : 내용별첨	—검사통지서 송부
	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별지 제 11-3 호 서식에 의한검사신청서를 해당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별지 제 11-3 호서식 신설 : 내용별첨	—업체의 검사신청
	⑤공업진흥청장은 검사를 받은 업체로 하	—업체에 대한 경비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여금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제 30 조제 4 항의 평가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18 조 제 4 항에서 정한 제품시험수수료 2. 5 급 공무원에 준한 여비 및 공업표준심의위원회에 준하는 수당	부담 근거 설정 • 도자기시험소, 지공소에 신청시는 예외 • 수수료 • 여 비 • 수 당
	⑥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검사실시일자를 신청업체에 통지하고 통지된 검사실시일자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평가기관은 검사가 완료되면 7 일이내에 검사결과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공업진흥청장은 제 7 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제 2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검사실시 일자통지 및 검사 —평가기관→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 —공진청장 : 위반에 대한 처분
제 28 조 (사후관리 면제)① 공업표준화상 및 품질관리상 수상업체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도 포함) 에 대하여는 수상한 익년도부터 3 년간 사후관리를 면제한다.	**제 28 조** (사후관리 면제) ①우수 KS업체상 및 …… ……. ……. ……. ……. ….	용어변경 —공업표준화상→우수KS업체상
제 30 조 (평가기관 지정) ④지방공업시험소는 제 3 항에 의하여 지정한 표준화 능력평가기관으로 본다.	④지방공업시험소 및 도자기시험소는 제 3 항에 의하여 지정한 평가기관으로 본다.	○평가기관에 도자기시험소 추가
제 31 조 (기술지도 및 평가) ①평가기관은 제 19 조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서류심사로 갈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술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지도를 실시할 경우 기술지도위원회 선정, 지도내용, 지도방법 및 기타 지도실시요령은 "공산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장지도요령 (공업진흥청장 고시 제 84-721 호) "을 준용하며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 31 조** (평가기관에 의한 공장심사) ①제 1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는 당해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지 않은 평가기관에 의뢰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장심사를 의뢰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한 자는 공장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전면개정 —기술지도 담당하지 않은 평가기관에 공장심사의뢰 —기술지도 실시한 자의 공장심사 배재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③평가기관이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평가 종료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 14 호 서식에 의한 표준화 능력평가서를 당해 업체에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농업진흥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해당규격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평가기관은 별표 40 에 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평가위원회를 문야별로 지정하되, 평가할 때에는 복수로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장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하였던 자는 그 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③평가기관의 심사관은 별표 4 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급적 분야별로 2인을 배정하여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삭제 별표 4 개정 : 평가위원 자격기준을 공장심사관 자격기준으로 변경	
⑤평가기관이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로 한다.	〈삭 제〉	
⑥평가기관은 평가실적을 매 반기별로 별지 제 15 호 서식에 의하여 공업진흡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공장심사 실적을 매 반기종료후 20일까지 별지 제 14 호 서식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평가기관은 기술지도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공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은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공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1990. 5. 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요강 시행전 허가를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